

No

案

件

서울 特別市 合宿生活指導 費 縮減  
編纂 手當 支給 規程 由 改正 規程 (案)

主要 骨子

1. 改正 理由

地方 公 宿 費 手當 規程 (大 統 領 令) 의 改正  
(1922. 2. 9) 이 때 라 合宿 生活 指導 手當 의 引上.

2. 改正 內容

○ 合宿 生活 指導 手當 引上

2,000 元 → 2,500 元

○ 合宿 生活 指導 日誌 書式 變更

※ 서울 特別市 法規 整備 審議會 規程 第 2 條 第 1 項  
但書 規定 이 의거 審議會 는 輕 由 하 지 아니 함.

기안용지

467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6-186	전결규정 (전화번호 725-6375)	조항 신경사안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2.3.	82.3.9	5-67
보존년한			
보조기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심조
기안책임자	이상훈		
경유 수신 참조	과안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한속생활지도 및 편집판찬수당 지급 규정중 개정규정(안)		
(제1안) 내부 결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0723호 1982.2.9)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속생활지도 및 편집판찬수당 지급규정중 한속생활지도			
수당을 개정하고 한속생활지도 일지의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서울특			
별시 법규정보심의회 규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별첨(안)과 같이 개정 규정을 발령코자 합니다.			
첨부 : 1. 개정이유서 1부			
2. 개정안 1부			
3. 기타참고 자료 1부. 끝.			
(제2안)			
수신 : 공보관			
제목 : 시보 게재			
별첨 서울특별시 한속생활지도 및 편집판찬수당 지급 규정중			
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0201-1-8A(2)  
1969. 11. 10 5인

정직 질서 창주 745

190mm x 260mm 2군데용시 (60g/제)  
5 2 남 성

498

첨부 : 서울특별시 규정 제 호 1부. 끝.

(제3안)

수신 :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제목 : 훈령 발령

서울특별시 관속 생활지도 및 편입 편산수당 지급규정중 개정 규정  
을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함 것.

첨부 : 서울특별시 규정 제 호 1부. 끝.

결재  
1989 3. 08

해 경 이 유

- 0.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 (대통령령 제10723, 1982.2.5)에 따라 합속생활 지도 수당을 개정
- 0. 합속생활지도 임지의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기함.

시장

주 요 골 자

- 0. 합속생활지도수당 인상  
임분 2,000원 → 2,500원
- 0. 합속생활지도 임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

참 고 사 항

- 0. 관계법령 : 별첨
- 0. 예산조치  
82년 확보예산 : 14,182,000원  
82년 소요예산 : 17,727,500원 > 총 3,545,500원

증액분을 추가 결정예산에 반영기도 방심 검토

- 0. 합의여부 : 합의공본 발송중 (미합의)

서울특별시 한속생활지도 및 편집편찬수당 지급규정  
규정중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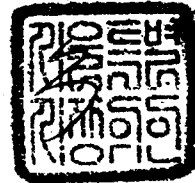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3. 9  
시각

1982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장

박영



- 서울특별시 연속생활 지도 및 주민편찬수당 지급규정을 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연속생활지도 및 주민편찬수당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지급액)중 "2,000원"을 "2,500원"으로 한다.
- 제3조 (지급범위)중 "일반직 공무원 및 보정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 제2항중 "복지시식"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고 육 은 영 일 지  
=====

19 . . . . . ( 요일 )

지도계장	교학부장	교수부장	교육원장	합
				계

구	본			
1. 인원 현황				
2. 시간운영사항				
3. 장소 상태	생활관	공동구역		
4. 지시사항 및 조치				
5. 특기 사항				
6. 기				
근무처 : 합숙생활 지도교관 사 관 : (인) 교 관 : (인) 교 관 : (인) - 인 계 사 항 -				
인	계	인	수	

750 474

신구조원대비표

조항	내역	계액
제 2 조 (지급액)	합속생활 지도수당은 1일방 2,000원으로 한다.	2,500원
	<p>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이 예산, 업무의 성격, 난이도 기타 실정을 감안하여 2,000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p>	2,500원
제 3 조 (지급범위)	합속공복을 담당하는 서울 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공무원
	<p>으로서 합속교육기관중 합속생활 을 지도하면서 다음각호의 1역 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합속생활 지도수당을 지급한다.</p>	



(별지) 현황

한속 생활 지도 일지

지도계장 교수부장 교육원장

19 . . . . .  
(요일) (과정)

지 도 부 차	소 속 부 장	소 속 부 장	지 도 부	1. 2. 3.
지도시간		지도내용		

시장

(별지) 현황

교육운영일지

19 . . . . . (요일)

지도계장	지도계장	지도계장	지도계장	지도계장
------	------	------	------	------

구	본			
1.인원 현황				
2.시간운영상황				
3.생소 상태	생활관	공동구역		
4.지시사항및조치				
5.특기 사항				
6.기	타			
근무자: 한속 생활 지도교관 사 관: (인) 교 관: (인) 교 관: (인) - 인 계 사 항 -				
인	원	인	원	비
계	수	의	의	고

752 472

은호

예산 개요 및 산출 근거

-----

" 82년도 서울특별시 새입세출 예산서"의 세출 예산금

0. 합숙 생활 지도수당

임 단 2,000원 × 43인 × 7월 × 23개 = 13,846,000

소 방 2,000원 × 2인 × 42인 × 2개 = 336,000

계 14,182,000 원

임 단 2,500원 × 43인 × 7월 × 23개 = 17,307,500

소 방 2,500원 × 2인 × 42인 × 2개 = 420,000

계 17,727,500 원

총 3,545,500

753

471

남해군립도서관 설립

0. 직공명령 제 10723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제3조

제 3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령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4. 특수업무 직무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차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 임하는 교육기관종 경구 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학습 생활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1일당 2,500원 이하

부 록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세무서의 동급구분의 2급세무서의 소제구분단중 "김제세무서"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서기관 1인)은 국세청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별표 1]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

지	급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총	계	1,438(조사요원 239인 포함)	11,900
별정직	계	8	
전산처리사(6급상당)		4	
전산처리사(7급상당)		4	
일반직	계	1,119(조사요원 239인 포함)	10,746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서울·부산지방국세청)		2	
부이사관(중부·대전)		4	

지	급	지 방 국 세 청	세 무 서
· 방 주 · 대구 지방국세청)			
서기관		20(조사관 2인 포함)	89
행정사무관		87(조사담당관 25인 포함)	267
세무주사		423(조사요원 103인 포함)	1,852
세무주사보		360(조사요원 69인 포함)	2,344
세무서기		145(조사요원 40인 포함)	2,389
세무서기보		78	3,705
기능직	계	22	113
9등급 조무원		5	
10등급 조무수		17	113
교 용 직		289	1,041

◇地方稅務官署職制 改正理由

地方國稅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一部機構를 調整·改編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地方國稅廳長 直屬의 弘報官을 弘報課로 改編하여 徵稅調査局에 등. (令 第 8 條)
- 나. 直稅局의 調査官을 調査擔當官으로 改稱하여 徵稅調査局에 등. 다만, 서울地方國稅廳과 釜山地方國稅廳의 調査官은 廳長 밑에 등. (令 第 5 條 第 1 項·令 第 6 條 第 2 項·令 第 8 條 第 1 項 및 令 第 9 條)
- 다. 서울地方國稅廳과 釜山地方國稅廳을 제외한 地方國稅廳徵稅調査局의 指導課와 調査課를 調査管理課로 統합함. (令 第 8 條)
- 라. 서울地方國稅廳과 釜山地方國稅廳의 徵稅調査局의 指導課와 調査課를 廢止함. (令 第 8 條)
- 마. 서울地方國稅廳 徵稅調査局 徵稅課를 徵稅 1 課와 徵稅 2 課로 改編함. (令 第 8 條)
- 바. 釜山徵稅廳長의 職級을 4 級에서 5 級으로 調整함. (令 別表 2)
- 사. 定員 1 人(書記官)을 國稅廳에서 移轉함. (令 別表 1)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을 의해 공포한다

1982년 2월 9일

대통령 전두환 인

국무총리 유창순  
국무위원 서정화  
내무부장관

◎대통령령제 10,723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다 한다.

③제 2항의 봉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의 11호봉 봉급액(경로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호봉 봉급액)의 3월치 해당하는 금액
2. 호봉제를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봉급액의 1.5월치 해당하는 금액

**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 교대근무직종인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근무수당액은 배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 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월치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 3항에 규정된 봉급 기준액의 26분의 1의 15월치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8조 (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직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숙직수당액은 1일밤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한다.

**제19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별표 9와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상표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동표제 2호 제 4호 제 5호 제 12호 및 제16호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공무원에게는 결근 3일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의 일액(수당 일액은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감하여서 지급한다.

③경리·회계직인 또는 유직(공무상 임명되고 있던 유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민의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직종직종직인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서 지급하고,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직종(출장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 1호 및 제 15호의 수당을 제외한다) 및 위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급 유직하거나 장의 또는 과장의 직책을 맡거나 임명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전방으로 인한 유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법 제65조의 2 제 1항제 2호 또는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지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장가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⑥별표 3을 삭제한다.

⑦별표 4의 제목 "조정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하고, 별표 8을 별지의 길이 하고, 별표 9를 별지의 길이 신설한다.

⑧(시행인) 아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⑨(조정수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82년 3월 39 83년 2월 29일

468 756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4. 학습생활지 보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 근무시간외에 비교육기의 학습생활지원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1월밤 2,500원이하
5. 면접·편찬 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 각 시험문제의 면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월당 4,000원이하
6. 전라철작업 수당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풍수해·설해·낙석·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야간에 전철선로를 순회 근무하는 선로반근무 공무원 및 전철주간 전기분소 또는 전력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당 200원(이 경우 동일인에게 1일 밤 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7. 전산업무수 당	전산업무(전·검공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년이상종사자 : 월50,000원이하 3년미만 1년이상 종사자 : 월30,000원 이하 1년미만 종사자 : 월20,000원이하·수당지급기준 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업무를 담당할 근무연수로 한다.
8.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자동차운전(중기조종을 포함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40,000원이하
9. 선박근무수 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을 제외한다)에 월 15일이상(1월중의 합계일수가 15일에 도달된 때에는 2월간의 합계일수를 통산하여 월 15일이상)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월10,000원이하

(별지제 28호 서식)

주 택 건 설 사 업 제 획 승 인 신 청					처 리 기 한	
신 청 인	상 호	선동아 건설주식회사		지정동행번호	240 53	
	대 표 자	유 상 근		영업소소재지	260-0094	
설 계 자	성 명	오 분 석		자 격	건축사	
	주 소	중구 문지로5가 210-68 (전 화) 260-0381				
공사시공자	성 명	선동아건설(주) 유 상 근		차 권 료 격	260-0094	
	주 소	중구 남대문로5가 166번지 (전 화) 차격: 건설업자24호				
사 업 제 획	사업내용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주택규모	
		26,644㎡	85019㎡	아파트	12층7동	
	사업기간	착 공 예 정 일		竣 공 예 정 일		
		1981 . 11 . . .		1982 . 12 . . .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p>						
시 장 도 계 사	장 하	<p>신청인 19 서울特別市 中区 南大門路 5街 166號          新東亞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劉 相 根</p>				
첨부서류 :		<p>1. 사업계획서 1부          2. 주택 계획 부속지침서 및 배치도 1부          3. 설계도서 1부          4. 환지에정증명서 (부외증명) 1부          5. 토지등기부 등본 1부</p>				

466

758.